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3010006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02.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8.08

www.hairgo.co.kr
ok@hairgo.co.kr

[고정현 헤어]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고헤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고헤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9 (구월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2-507-325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2-527-325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기획관리본부 032-507-325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고헤어	고정현헤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9 (구월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08.07	2012.08.06	황대건	032-507-3256	032-527-3256
	법인등록번호	120111-0622284	사업자등록번호	122-86-262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 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사	황대건	고정현헤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9 (구월동)		
	2012.8.7. ~ 현재		황대건	032-507-3256	032-527-3256
사내이사	고정현	고정현헤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9 (구월동)		
	2012.8.7. ~ 현재		황대건	032-507-3256	032-527-3256
계열회사	주식회사 이엑스피 코리아	젠틀루뉴욕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9 (구월동)		
			황대건	032-507-3256	032-507-3256
	법인 등록번호		110111-6212502	사업자등록번호	299-86-0038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고정현헤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고정현헤어	
상 호	고정현헤어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 : 제45-2012-0004034호 (2012.08.10) 등록 : 제45-0050663-0000호 (2014.08.13)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077,238	3,233,551	2,843,686	2,217,818	398,939	278,273
2022년	5,936,209	2,838,998	3,097,211	2,469,613	419,741	288,525
2023년	6,317,883	2,773,435	3,544,447	2,913,816	651,471	478,736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황대건	대표이사	2012.08.07 ~ 현 재	고헤어 대표이사	경영관리
관련임원	고정현	사내이사	2012.08.07 ~ 현 재	고헤어 이사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고 헤어	가맹사업 경영	2015.3 ~ 2022.11	하다헤어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라는 영업표지의 이미용 브랜드 경영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황대건	다른 가맹본부 (주식회사 이엑스피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	2017.12 ~ 2022.11	젠틀루 뉴욕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라는 영업표지의 이미용 브랜드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 운영 (매장 내외부 간판등 사용)	출원 2012.08.10. 등록 2014.08.13	출원번호 45-2012-0004034 등록번호 45-0050663-0000	고정현	2024.08.13

- ▶ 당사는 “고정현헤어” 지식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당사에 방문하여 일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고정현헤어] 가맹사업 현황

1. [고정현헤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3. 3. 1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 없음)

2. [고정현헤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고헤어	고정현헤어	황대건	2013.03 ~ 2019.10	인천광역시 경원대로 1385 (부평동, 3층)
(주)고헤어	고정현헤어	황대건	2019.10 ~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9 (구월동)

3. [고정현헤어]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고정현헤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미용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고정현헤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전체	18	-	19	-	23	-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17	-	18	-	22	-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1	-	1	-	1	-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고정현헤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5	3	-	-	1	18
2022	18	1	-	-	-	19
2023	19	4	-	-	1	23

6. [고정현헤어]의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고정현헤어]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 가맹점 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제외)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3	676,509	12,707	1,563,138	20,613	262,843	3,347	21곳산출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22	677,499	11,719	1,563,138	20,613	262,843	3,347	20곳산출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1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 위 표의 매출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당사 21개 가맹점의 POS 상 매출액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당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고정현헤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고정현헤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3	1,96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고정현헤어] 가맹점관리를 위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산곡동지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11-151	032-506-447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

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

1.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신청 - 공인인증서 설치
2. [국민은행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로그인
3. [기업] - [기업서비스] -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점 사업자] - [가맹금예치금 예치]
 - 가맹본부 사업자번호에 주식회사 고해어 사업자번호 [122-86-26283] 입력
 - 하단의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예치금] 입금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은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정현헤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최초가맹금의 2가지 유형	
대형마트/쇼핑몰/백화점	로드샵

가) 대형마트/쇼핑몰/백화점 입점시의 최초가맹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 계	50,000		-	
상권분석 및 입점활동	25,000	계약체 결 후 다음날 까지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제공대가	5,000		개설 시 상권분석,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	개설 시 상권분석,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시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브랜드밸류 관리대가	20,000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나) 로드샵 입점시의 최초가맹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	-------------

총 계	30,000	-	
상권분석 및 입점활동	5,000	계약체 결후 다음날 까지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제공대가	5,000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브랜드밸류 관리대가	20,000		개설 시 상권분석,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0			
보증금	20,000	계약 체결 후 다음날까지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대형마트/쇼핑몰/백화점	로드샵
합계		70,000	50,000
최초가맹금	상권분석/입점활동	25,000	5,000
	오픈교육/경영지도	5,000	5,000
	브랜드밸류관리대가	20,000	20,000
	보증금	20,000	20,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없는사유
----	------	----	-----------------------------	------	------	----------

총 계		195,000~ 235,000(99 m ² 기준)	6,500 ~7,834			
인테리어/설비	점주	75,000	2,500		해당없음	
외부 간판 등	선정업체	20,000~ 30,000	667 ~1,000			
기구/집기/소모품	가맹본부	30,000~ 40,000	1,000 ~1,334	납품 이전 선납	상품 미공급시	상품 공급시
매장용 집기/소모품		20,000~ 30,000	667 ~1,000	상품 미공급시	상품 미공급시	상품 공급시
최초 상품 비용		50,000~ 60,000	1,667 ~2,000	상품 미공급시	상품 미공급시	상품 공급시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전기승압장치, 냉난방기기, 외부환풍, 자동문, 강화유리, 소방설비, 철거, 온수시설, 간판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² 기준으로 1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희망지역 접수 → 당사 기존지점과의 거리/상권등 검토 → 당사의 지역확정 → 가맹희망자 현장조사 또는 외부컨설팅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 계약 → 완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미용사 자격(면허)증을 소유할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8세 이상(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필수) ○ 직무상 필요한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할 것

		○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채용으로 말미암아 그 직원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존 또는 인근 지점의 이익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정판정에 따라야 함
--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사용료	가맹본부	<table><tr><th>면적</th><th>금액</th></tr><tr><td>99㎡ 미만</td><td>2,000</td></tr><tr><td>198㎡ 미만</td><td>2,500</td></tr><tr><td>198㎡ 이상</td><td>3,000</td></tr></table>	면적	금액	99㎡ 미만	2,000	198㎡ 미만	2,500	198㎡ 이상	3,000	매월 25일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면적		금액											
99㎡ 미만		2,000											
198㎡ 미만		2,500											
198㎡ 이상		3,000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20% 전체 가맹점사업자 80% (전체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온라인 광고 분담금													
판촉 분담금	실비												
교육훈련비	실비	교육 실시 7일 이전	개시전 전액반환										
상품공급비	실비	선납	-	-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실비												

간판변경 비용					
블로그/카페 위탁관리비용		블로그/카페 1개당 400,000원	필요시 별도약정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홈페이지, 쇼핑몰 등)		설비	필요시 별도약정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프로모션/이벤트	프로모션/이벤트 현황 감독	수시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품질 감독	수시	
인테리어/설비	인테리어/설비의 현황 감독	분기 1회	
제품/물품	제품/물품의 사용 현황 감독	수시	
회계처리	매출누락 여부 회계조사	월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 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고정현헤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새로운 가맹점주는 귀하와 보증금과 가맹비를 양도, 양수하되 주식회사 고헤어에는 매장 운영 및 서비스관련 교육의 이수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정, 금전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을은 다음의 조치사항을 취해야 한다.

(가)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한다.

(나) 갑으로부터 지급된 메뉴얼과 일체의 인쇄물 및 상표가 있는 용품을 즉시 파기 또는 반환한다.

(다)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정보 서류 일체를 반환 또는 파기한다.

(라) 가맹점 매장의 가구, 비품에 표시한 모든 상표를 파기한다.

(마) 가맹점 매장 내·외장에 표시된 갑의 영업표지 등 고정현해어의 이미지를 완전히 삭제 또는 철거한다.

(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제반 서류를 반환한다.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2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귀하가 [고정현해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컷트 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용역을 제공할 수 없 음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 위반시 계약해지

염색		
클리닉		
기타(메이크업/네일 등)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 또는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1인기준)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커팅트	20,000원부터 ~	사전 통지 (변경시행 2주전 통지)	2020.12 기준
펌1(일반)	60,000원부터 ~		
펌2(특수)	100,000원부터 ~		
염색	50,000원부터 ~		
클리닉	50,000원부터 ~		
미용제품	소비자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미용업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에서 도보거리를 중심으로 500 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고정현 헤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고정현해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조 1항
○ [고정현해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9조 1항 4조 계약갱신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9조 1항 4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19조 1항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①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②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제4조 제1항 ③항목에 정하는 사항	4조
4.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개점하지 않은 경우	19조 1항
5. 을이 영업표지사용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19조 1항
6. 영업표지사용료 산출을 위한 매출액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19조 1항
7.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9조 2항 4조
8.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19조 2항
9.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9조 2항
10. 영업표지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구조물과 싸인물, 그리고 안내장, 할인권 등 모든 인쇄물의 제작 및 사용과 통신, 영상화면에 관한 전지적 방법을 포함 또는 응용한 PC,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은 반드시 갑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갑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조
11. 을이 아래 4가지 항목을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가맹점의 내장 및 외장 (간판, 사용표지의 글자체, 점포 장식 일체)을 설계 시공 또는 디자인함에 있어서 갑이 정하는 매뉴얼 및 지도를 을은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가맹점 내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갑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디자인이 되어 있는 설비용품(기구, 집기, 비품 등)을 갑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별도 구입할 수 있다. 다. 을은 직원 유니폼, 컷트보, 고객가운 등의 미용소모품류 일체는 갑이 정한 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갑이 제품의 변질, 청결상태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이 지정한 신용카드거래 승인대행사(벤사)로부터 카드승인서비스를 공급 받아야하며, 갑은 을의 카드사별 매출자료를 가맹사업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10조
12. 을은 가맹점의 개장 후 개조, 보수를 원할 경우 갑에게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만일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개조, 보수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조
13. 갑은 을의 점포설비 및 장식을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매년 4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동일한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최초 설치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고정현해어 브랜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시설의 부분 또는 전체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10조

있다. 을은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교육 및 회의(행사)에 대상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의무 또는 필수교육을 계약기간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조
15.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지정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육일자 5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교육에 참석치 않거나 수료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조
16. 을은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갑이 정한 모든 가맹점, 또는 특정 지역가맹점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제휴 서비스내용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계약 기간내 2회 이상 위반시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4조
17.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는 실시할 수 없다. 할인은 최고20%로 제한하며,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조
18.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할 시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원자재 또는 상품을 사용하여야한다. 사용해야할 제품명은 별첨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서면으로 별도 지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갑이 정한 가맹점 권장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권장사항의 내용은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수시로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지한다. 다. 을은 매장운영을 위해 점장과 교육실장을 임명한다. 라. 을은 항상 미용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외부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을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매출 정보를 공유한다. 공유 방법은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바. 을은 매일 갑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 갑이 지정한 매체를 통하여 지시한 전달사항을 숙지하고 게시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을은 갑이 정한방식에 따라 영업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을은 제품과 용역의 가격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갑과 협의를 해야 한다. 품목별 균일가격시행은 전략적 단기행사에 한하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을이 갑의 브랜드 가치 및 명예에 대외적(대중매체, 온라인 등)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차. 을은 갑이나 갑의 임직원 및 기타 가맹점주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폭행 또는 폭력 등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타. 을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과 제품의 신청은 갑이 정한 방식에 의하며 선결제 원칙이다.	15조

파. 을은 영업상의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 등 갑 또는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다음의 배상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오픈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 화재보험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다. 뷰티배상책임보험	
19.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정한 클레임 대응 지침에 따르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2회이상 동일한 사안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조
20. 을은 본 계약을 통해서 학습된 경영상, 영업상 취득한 갑의 매출정보, 고객정보, 매장운영정보, 운영노하우 등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를 위반하여 갑 또는 타가맹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갑 또는 타가맹점에게 배상한다.	17조
21.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의 계약과 유사 또는 동질의 계약을 타 업체와 할 수 없다. 을이 본조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	19조 2항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①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②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③승인 여부 통지 → ④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⑤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기획관리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다만 매장 운영 및 서비스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영업/마케팅 업무에 관하여 업무위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위탁비용 및 수수료는 별도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협의결정 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범위	절 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 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영업/마케팅 관리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 아래에 따라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미용업	①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②당사 담당팀 검토 → ③허가 여부 통지 → ④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정현해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0:00 ~ 23:00 (13시간)	365일	문의: 기획관리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스타일리스트 6명 인턴 6명 관리자 2명	직접 근무	점장급 관리자	※ 기준면적 : 99㎡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청결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월	기획 관리 본부
서비스관리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 월	

당사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제품 및 상품 취급여부, 제품 보관상태, 매장청결도, 서비스 현황, 회계 및 매출장부열람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당사 담당자와 가맹점 사업자가 서명 기록하여 가맹본부가 보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 고
전국광고	상품 광고	사전통지 [통상:20%]	사전통지 [통상:(전체가맹점)80%] pos총매출액비율에 따라 산정	별도 절차 없음	전국광고 (TV,라디오,5대 일간지 등)
지역광고	상품 광고	사전통지 [통상:20%]	사전통지 [통상:(지역가맹점)80%] pos총매출액비율에 따라 산정	별도 절차 없음	해당 지역
온라인 광고분담 금	상품 광고	사전통지 [통상:20%]	사전통지 [통상:(전체가맹점)80%] pos총매출액비율에 따라 산정	별도 절차 없음	
판촉행사	할인 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 시→가맹점의 행 사 참여 결정→행 사 시행→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 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 70%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 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2013년 자료 없음)	상동	상동	
제휴서비스	-	사전통지(행사에 따라 달라짐) [통상: 팜플렛 등의 디자인 시안 제작비용은 가맹본부, 판촉물 제작 소요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도 절차 없음	카드사,통신사 등 제휴사와의 할인 제휴서비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제휴 및 할인서비스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정한 모든 가맹점, 또는 특정 지역가맹점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제휴 서비스내용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계약 기간 내 2회 이상 위반시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할인율은 최고20%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60일 내외	[245,000~305,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제공, 인근가맹점사업자 현황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0~58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44(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4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예치 ○ 가맹금 예치증명서 전달 및 보관	D-44	[50,000~70,000]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일정확인	D-44~30(15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착수(자재발주 및 현장투입)	D-30~28	
인테리어 공사 상품, 원부자재	○ 공사실시/ 상품, 원부자재 입고	D-28~3(25일)	[195,000~235,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 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관측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렌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관측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렌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 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 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고정현헤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영교육/행사

정보제공, 의사전달, 시정명령 등 본사의 교육소집명령에 의한 모든 교육을 통칭합니다.

가맹계약 후 운영능력 습득을 위한 기초소양교육, 가맹점 운영 중 매년 본사의 영업방침 등에 대한 변경사항 또는 가맹점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교육, 경쟁력 강화, 판매기법, 서비스향상, 시스템, 신제품교육, 매뉴얼 준수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나. 기초교육

가맹점 사업장의 미용시술부문 종사자가 미용시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 보수교육

주식회사 고헤어 가맹 프랜차이즈의 기술적인 통일성 제고와 서비스역량향상,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고정현헤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	대상자	주요내용	비용부담	횟 수	비고
운영 교육	오픈교육	전 직원	매장 오픈필수교육	본사지원	1회/오픈시	
	신입교육	신입	입사시 필수교육	실비	1회/재직시	
	경영교육	점주/점장	경영관련 필수교육	실비	1회/月	
	영업결산	점주	영업결산 필수회의	실비	1회/月	
	관리자교육	관리자	매장운영 필수교육	실비	2회/月	
	월례회	스타일리스트	영업결산 필수회의	본사지원	1회/月	

기초 교육	베이직1	인턴사원	승급 필수교육	실비	월 2회	
	베이직2	인턴사원	승급 필수교육	실비	월 2회	
	어드밴스1	인턴사원	승급 필수교육	실비	월 2회	
	어드밴스2	인턴사원	승급 필수교육	실비	월 2회	
	승급자	승급자	기술 필수교육	실비	월 2회	
보수 교육	서비스교육	전직원	서비스 의무교육	실비	1회	
	리더쉽교육	전직원	서비스 의무교육	실비	1회/年	
	화술교육	전직원	서비스 의무교육	실비	1회/年	
	트랜드교육	스타일리스트	신청자에 한해 참석	실비	2회/年	

3. 교육·훈련의 주체

본사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가맹점의 계약자(운영자), 근무직원 모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채용직원에 대한 기본인사(경력)정보와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사에 통지하여 본사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기초과정교육 및 일정단계 이상의 기술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미용 기술, 고객응대등의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스텝, 매장관리부문 입사자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은 입사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하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수 있습니다.

미용기술 부문 입사자는 본사의 기술테스트 및 경력심사에 따라 지정하는 본사 내부 교육과정을 본사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수하고자 할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하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교육 및 회의(행사)에 대상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의무 또는 필수교육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을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2개월 내에 갑이 시행하는 신입사원교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다.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지정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육일자 5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교육에 참석치 않거나 수료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을은 본 계약기간 중 새로이 신설되는 서비스, 매장운영, 기초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바. 본 조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인 교육일정, 대상자, 주요내용, 교육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첨하며 갑의 가맹점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